법무부 보도자료 APEC 2025 KOREA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5. 9. 30.(화)

법무부, 제4기「사회통합자문위원회」출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개편방안」,
「인도적 체류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원방안」논의 -

법무부는 9. 30.(화) 10:3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사회통합정책 자문기구인 제4기「사회통합자문위원회」위촉식을 개최했다.

사회통합자문위원회는 사회통합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사회단체 활동가, 이민자 등 외부 위원 13명,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자문회의에서 위원들은「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개편방안」,「인도적 체류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하고, 법무부 사회통합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 ('09년부터 ~'25년 8월까지 누적 참여자 598,322명 / '24년 참여자 70,949명)

위원들은 초중고교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대학 학점 연계 과정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개편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인도적 체류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제언을 이어갔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위촉식에서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과 동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통합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내·외국인 간 상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칙인 '경청과 통합'의 자세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책임자	과 장	최문정 (02-2110-4140)
		담당자	사무관	주도현 (02-2110-414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PEC 2025 KOREA 10.27.~11.1. 경주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요**

1 개요

○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

〈출입국관리법 제39조〉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2 대상자 및 운영기관

○ **(대상자)** 국내 외국인등록을 한 모든 합법체류 외국인 및 국적 취득(귀화, 국적판정, 국적회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화자

구분	'09.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8월)	총합
참여자	86,893	30,515	41,500	50,639	56,535	36,620	43,552	42,163	58,028	**70,949**	**80,928**	**598,322**

○ **(운영기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대학, 지자체, 가족센터, 민간 단체 등 운영기관에서 교육 실시('25. 6월 기준 전국 384개)

3 교육과정 및 평가

< 교육과정 >

구분 \ 교육명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단 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 정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영주용	귀화용
총 교육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70시간	30시간

< 평가 >

구분 \ 평가종류	사전평가	단계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	
				영주용	귀화용
대 상	교육 참여 희망자	1~3단계 과정 수료자	4단계 과정 수료자	5단계 기본 과정 수료자	5단계 심화 과정 수료자

4 이수 시 혜택

○ **(체류자격 신청)**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에 따라 가점 부여 또는 요건 충족

○ **(영주·귀화 신청)** 영주자격 신청 요건인 기본소양 인정 및 귀화 요건인 종합평가 합격 인정